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4. 22) 상정
-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4. 2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실장 권 희 춘)

가. 제안이유

- 적용범위에 구청을 포함하고,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실공사의 적용범위에 직속기관(보건소)을 제외하고 구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최고 500만원 이내에서 등급에 따라 하향 조정함.(안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있음

나. 반대토론

없음 있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부천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부천시
(사업소 및 구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76호
의결 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출년월일 : 2010. 4.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부실공사의 적용범위에 구청을 포함하고,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실공사의 적용범위에 직속기관(보건소)을 제외하고 구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최고 500만원 이내에서 등급에 따라 하향 조정함.(안 별표)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부천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부천시(사업소 및 구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부실시공의 등급 정도	포상금 지급 한도액
1 등급	주요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500만원 이내
2 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내
3 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요 구조보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
4 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이내
그 밖의 등급	신고내용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의 안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감사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부천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u></p> <p>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u>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u>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5%;">부실시공의 등급 정도</th> <th style="width: 50%;">포상금 지급 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1 등급</td> <td>(생략)</td> <td>1,000만원 이내</td> </tr> <tr> <td>2 등급</td> <td>(생략)</td> <td>700만원 이내</td> </tr> <tr> <td>3 등급</td> <td>(생략)</td> <td>500만원 이내</td> </tr> <tr> <td>4 등급</td> <td>(생략)</td> <td>200만원 이내</td> </tr> <tr> <td>그 밖의 등급</td> <td>(생략)</td> <td>감사장</td> </tr> </tbody> </table>	구 분	부실시공의 등급 정도	포상금 지급 한도액	1 등급	(생략)	1,000만원 이내	2 등급	(생략)	700만원 이내	3 등급	(생략)	500만원 이내	4 등급	(생략)	200만원 이내	그 밖의 등급	(생략)	감사장	<p>제3조(적용범위) -----<u>부천시(사업소 및 구청을 포함한다)</u>-----</p> <p>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u>-----</p> <p>[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5%;">부실시공의 등급 정도</th> <th style="width: 50%;">포상금 지급 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1 등급</td> <td>(현행과 같음)</td> <td>500만원 이내</td> </tr> <tr> <td>2 등급</td> <td>(현행과 같음)</td> <td>300만원 이내</td> </tr> <tr> <td>3 등급</td> <td>(현행과 같음)</td> <td>200만원 이내</td> </tr> <tr> <td>4 등급</td> <td>(현행과 같음)</td> <td>100만원 이내</td> </tr> <tr> <td>그 밖의 등급</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부실시공의 등급 정도	포상금 지급 한도액	1 등급	(현행과 같음)	500만원 이내	2 등급	(현행과 같음)	300만원 이내	3 등급	(현행과 같음)	200만원 이내	4 등급	(현행과 같음)	100만원 이내	그 밖의 등급	(현행과 같음)	-----
구 분	부실시공의 등급 정도	포상금 지급 한도액																																			
1 등급	(생략)	1,000만원 이내																																			
2 등급	(생략)	700만원 이내																																			
3 등급	(생략)	500만원 이내																																			
4 등급	(생략)	200만원 이내																																			
그 밖의 등급	(생략)	감사장																																			
구 분	부실시공의 등급 정도	포상금 지급 한도액																																			
1 등급	(현행과 같음)	500만원 이내																																			
2 등급	(현행과 같음)	300만원 이내																																			
3 등급	(현행과 같음)	200만원 이내																																			
4 등급	(현행과 같음)	100만원 이내																																			
그 밖의 등급	(현행과 같음)	-----																																			